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190

발의연월일: 2023. 4. 6.

발 의 자:이개호·허 영·서삼석

이병훈・양경숙・신정훈

조오섭 • 어기구 • 박광온

김남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가 관광지 등에 입장하는 자 또는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 하는 자로부터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일부 관광지에서 입장료 등의 일부를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시행하며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주변 상권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확산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가 관광객에게 입장료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환급해주는 경우 환급한 입 장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4항신설).

법률 제 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관광객에게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환급해주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		
	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한다)가 관광객에게 입장료ㆍ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지역		
	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환		
	급해주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 입장		
	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전		
	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		
	을 지원할 수 있다.		